



정 보 공 개 서

[(주)메이플베어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5054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5. 06. 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07. 01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92, 5층, 6층(장기동, 메이플프라자)

대표 전화번호 : 031-986-0057

대표 팩스번호 : 031-986-995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메이플베어] 프랜차이즈팀 : 031-981-8147

이메일 주소 : admin@maplebear.co.kr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메이플베어 코리아	메이플베어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92, 5층, 6층(장기동, 메이플프라자)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05.15.	2018.05.31.	함선호	031-986-0057	031-986-9957
	법인등록번호	124411-0212415	사업자등록번호	422-87-00972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함선호/ (주)메이플베어 코리아	메이플베어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92, 5층, 6층(장기동, 메이플프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함선호	031-986-0057	031-986-995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	-----	-------



MapleBear

명 칭	메이플베어	-
상 호	메이플베어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메이플베어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36123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유치부 출원번호:4120050021854(2005.09.26) 등록번호:4101361230000(2006.08.16)
		초등부 출원번호:4120110014448(2011.05.20) 등록번호:4102349800000(2012.07.03)

5.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14,925	247,486	167,439	812,860	67,420	110,273
2022년	861,742	386,758	474,984	1,346,037	315,545	307,544
2023년	1,081,664	339,074	742,590	1,613,054	294,262	267,606

2) 당사의 최근 3 년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함선희	사내이사	2019.06.01. ~ 현재	사내이사	가맹사업 총괄



관련 임원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1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가맹원 상호로 사용	출원일 2005.09.26 등록일 2006.08.16	출원번호 4120050021854 등록번호 4101361230000	Maple Bear Global School Ltd.	2026.08.16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식재산권 만료일까지)
 (상표권)	가맹원 상호로 사용	출원일 2011.05.20 등록일 2012.07.03	출원번호 4120110014448 등록번호 4102349800000	Maple Bear Global School Ltd.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식재산권 만료일까지

* 당사는 상표등록권자와 상표사용권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MapleBear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메이플베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원 오픈일) : 2015 년 6 월 25 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CECN GLOBAL SCHOOLS Ltd.	메이플베어	로드니브릭스	2006.07.01~2009.04.08	1430 Terrace Avenue North Vancouver BC V7R 1B4 Canada
GLOBAL SCHOOLS Ltd.	메이플베어	로드니브릭스	2009.04.08~2011.04.15	
MAPLE GLOBAL SCHOOLS Ltd.	메이플베어	로드니브릭스	2011.04.15~2019.05.31	
(주)메이플베어코리아	메이플베어	함선호	2019.06.01 ~ 현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2로 92, 5층, 6층(장기동, 메이플프라자)

3.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
메이플베어	교육(외국어)	영어 교육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메이플베어] 가맹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0	9	1	10	9	1	11	10	1
서울	2	2	-	2	2	-	3	3	-
부산	-	-	-	-	-	-	-	-	-
대구	2	2	-	2	2	-	2	2	-



인천	1	1		1	1		1	1	-
광주	-	-	-	-	-	-	-	-	-
대전	1	1		1	1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3	1	4	3	1	4	3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메이플베어] 가맹원 수

당사의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9	0	0	0	0	9
2022년	9	0	0	0	0	9
2023년	9	1	0	0	0	10

6. [메이플베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메이플베어]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메이플베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말	2023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가맹점수	매출액	면적3.3㎡당	상한	면적3.3㎡당	하한	면적3.3㎡당	
전체	10	1,488,642	6,289	2,885,742	11,542	693,302	3,851	10곳 산정
서울	3	-	-	-	-	-	-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2	-	-	-	-	-	-	5곳 미만
인천	1	-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
대전	1	-	-	-	-	-	-	5곳 미만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3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당사에서 추정 한 매출액은 가맹점에서 발생한 원생 수강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메이플베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메이플베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시간
2023년	10	4,637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959	 (비공개)	—	
광고			3,890	 (비공개)	—	
판촉	소계	 (비공개)	69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지점	전화번호
---------	-------	----	------



MapleBear

신한은행	고객센터	신한은행 전지점	1599-8000
------	------	----------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영업을 시작하거나가맹계약체결일 부터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이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당사는 별도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메이플베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약 264,000,000원(실전용면적 396㎡(120평)기준, 부가세포함)**의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부가세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1 억 7 천 600 만원	계약 체결 시 (영업개시일에 받는 곳은 영업개시일)	-가입비(가맹비의 10%) -점포실사(가맹비의 5%)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제공, 노하우 전수 및 운영 교육, 오픈 지원 (가맹비의 75%) -개점 전 서비스 교육(가맹비의 10%)

*반환조건: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2) 보증금액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천원, 부가세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원 양수자
가맹비	176,000	1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396㎡기준 (약 120 평)	면적 3.3㎡당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176,000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자체 조달 및 가맹본부	158,400	1,320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		2,200			-
가구		1,100			-
컴퓨터		11,000			-
교자재		2,200			-
홈페이지		1,100			-
별도금액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등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수있는금액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m²당 (22만원, 부가세포함)의 도면비, 감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5) 가맹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점포 미보유 시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점포 보유 시 : 최소 점포 기준 264 m ²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원사업자와 그 강사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원에 강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강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E2비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범죄경력이 없을 것 -신체검사를 만족시키는자

7) 가맹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점포규모 : 330 m²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부가세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BI·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영업표지 변경 시	변경설치 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아래표 참고	개원일로부터 2개월 마다 후불 지급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가맹원관리에 대한 대가로써 후불로 지급하므로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해당없음

로열티	학부모가 내는 총 교습비의 4.4%(급식비 제외)
기본교습비	해당 원이 속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허용한 분당 교습비
제외금액	피복비, 차량비, 재료비, 급식비(매년 1월1일 가맹본부가 책정한 금액 내) (교육청에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제외)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 년)	내용(단위: 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자료, 원생 명단, 등록금 수령 내역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최초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가맹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른 사업자와 귀하의 가맹계약체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apleBear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I·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당사에 교육비, 법률비용, 회계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1,100 만원, 부가세포함)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갑”과 “을”의 잔여계약 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새롭게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가맹비(1 억 7 천 600 만원, 부가세포함)를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메이플베어”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 및 영업표지가 포함된 모든 간판, 슬로건, 양식, 장비, 교자재, 홍보물, 문구류의 사용을 중단하고 30 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철거에 드는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귀하는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자료 등)를 당사에 즉시 반환합니다.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MapleBear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교자재를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교자재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공급받은 교자재의 일부를 반품할 수 있습니다.
- ⑤ 귀하는 본 계약 종료와 동시에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⑥ 귀하는 가맹점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30 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이 종료, 해지된 이후, 귀하는 자신이 메이플베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알려서는 아니 됩니다.
- ⑧ 귀하가 메이플베어 가맹점을 운영했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메이플베어의 영업표지, 디자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메이플베어 상호나 프로그램과 혼동이 될 수 있는 상호,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메이플베어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서도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없음 : 당사는 가맹점에 교육프로그램 외에 공급하는 물품은 없으며, 교재 등은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비용은 로열티에 포함된 금액으로 따로 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메이플베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메이플베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메이플베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교육서비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원사업자가 취급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판매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원 전 당사가 지정한 교육프로그램만 판매해야 합니다.
-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개원 전 지정한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취급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제한		위반 시 책임
Movement & Me	INP/ ILP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KG4	ISP 1 / 2	
KG5	BridgeS	
KG6	Advanced Elementary 1/2/3	
KG7	Elite Elementary 4/5/6	
	Camp	

2) 거래상대방에 따른 교자재의 판매

“을”은 “갑”의 허락 없이는 “갑”이 공급한 콘텐츠 소스(예:유치부 Unitbook, 초등부 Anthology)를 활용하여 교재 제작 및 타 브랜드의 가맹원, 기타 자영업자 등 “갑”과 계약한



“을”의 점포 외의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근 [메이플베어] 가맹원사업자의 교자재 부족 비상 시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다.

3) 가맹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영어 학원	메이플베어	해당없음

*최초계약기간에는 [메이플베어] 브랜드에 한하여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설치 불가능 다만, 변경사유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설치 가능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 개 구(區)에 1 개 가맹원	별지에 지도로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구가 없는 지역은 1개 시(市) 또는 1개군(郡)에 1개 가맹원]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지도로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점포 입점 가능)

*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 시 해당 상권에 1 개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설치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MapleBear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메이플베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메이플베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2.82%	7.18%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② [메이플베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② 귀하가 계약갱신 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갱신 시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상의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재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갱신계약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수법 및 제공하는 메이플베어 표준 교육 프로그램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

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1. 제 4 조 영업거점지역의 설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제 5 조 가맹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 6 조 가맹원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제 7 조 가맹원사업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제 8 조 가맹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제 9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 제 10 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8. 제 11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9. 제 15 조제 2 항 실내장식, 점포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10. 제 15 조제 3 항 시설의 유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
11. 제 20 조제 2 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12. "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3.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14. "을"이 교육청의 학원 인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15. "을"이 일방적으로 "갑"과의 연락을 끊고 60 일이 경과한 경우
16. "을"이 "갑"이 제공하는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7. "을"이 본 계약 서명 후 90 일 이내에 협의된 위치에 학원을 오픈하지 않을 경우
18. "을"이 학원 운영에 필요한 초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9. "을"이 원래 영업장에서의 임대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해당 영업거점지역 내에서 다른 학원 장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0. 영업장이 파괴되어 30 일 이내에 복구할 수 없고, 또 30 일 이내에 해당 영업거점지역 내에서 다른 학원 장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1.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갑"에게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22. "을"이 제 3 자에게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갑"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3. "을"이 등록시스템에 원생 및 기타 내용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24. "을"이 양도 절차를 본 계약서 내용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25. "을"이 "갑"이 영업장을 방문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26. 가맹원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갑"이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경우
27. 본래 영업장의 크기를 변경하면서 "갑"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8. 영업표지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29. "을"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 "갑"의 상호(메이플베어)와 혼동이 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30. "을"이 메이플베어와 혼동이 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오픈하는 경우
31. "을"이 "갑"의 직원을 스카우트하여 채용한 경우
32. "을"의 가맹점의 원생을 다른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
33. "을"이 "갑"이 진행하는 교육 및 훈련에 3 년동안 50%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미만으로 참석하는 경우
34. 기타 본 계약에 정한 "을"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당사 또는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귀하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7. 가맹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입비 및 점포실사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가맹비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원운영권 이전 완료

*귀하가 제 3자에게 가맹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자가 제안한 양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당사가 양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제 3자와 양도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양도 조건으로 다시 한번 당사에 양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도록 합니다. 당사가 양수를 거절한 뒤에 6개월이 지나도록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당사에 다시 한번 양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도록 합니다.

2) 가맹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이나 전전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겸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겸업금지의 범위

메이플베어의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계약의 존속 중에 귀하 및 귀하가 제 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계약기간 중	유아 및 초등생 대상 영어학원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메이플베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19:00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일수 준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9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강사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원포(영업장)의 강사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강사수	직접 근무 여부
--------	----------

가맹원장 자율	직접 근무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서비스의 표준화)	운영시스템 준수, 자체교육프로그램 사용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학부모접대, 강사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위생, 청소현황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메이플베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원부담	분담절차
광고	전국 광고	브랜드광고	50%	50%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 45일 전 계획안 공고(가맹원부담액 제시)→ 가맹원의 행사 참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 니다.)
		브랜드 광고 + 가맹원 모집광고	50%	50%	
		가맹원모집광고	100%	-	
	개별광고	-	100%		
판촉	전국판촉	50%	50%		
	개별판촉	-	100%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규모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하기 20일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가맹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 13 조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계약서, 매뉴얼 등의 반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50 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번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 또는 당사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2,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제 9 항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2,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의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귀하가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위약벌로 (2,000 만원)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물품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500 만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



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자는 소송 등으로 소요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및 실제 지출한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보수를 승소한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원 개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97~134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IV. 가맹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	7일~14일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안내	2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원스케줄링 확인	2일	
공사 착수	공사 실시	60일	
강사채용	-강사 모집, 면접, 비자발급	90일~120일	
교육실시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120시간	
PC입고	- PC입고	2일	
교자재 입고	- 교자재 입고	1일	
개원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원희망자/가맹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강사 채용이 늦어질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 일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에서는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당사에서는 공동광고비에 의하여 진행하는 광고 이외에 별도로 판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없음>

당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로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용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당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메이플베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원전)	교육프로그램 제공 방법 및 개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본사 또는 지정 교육장)	3개월(120시간) (점주 협의 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신교육 프로그램 교육 (개원후)	신교육프로그램 제공방법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최초 가맹비에 포함	신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필수교육
Director Meeting/ Teacher Training	프로그램, 교수법, 평가, 학부모 상담,	인터넷, 본사 또는 지정 교육장	9일 (실시 1개월 전에 실 비 및 최소시간 공지)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당사의 신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신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 및 귀하의 가맹원 소속 강사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 및 귀하의 가맹원 소속 강사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강사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강사는 신교육프로그램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김포한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92,5.6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139,849	당사에서 추정 한 매출액은 가맹점에서 발생한 원생 수강료 매출액입니다.



MapleBear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31-981-814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2023 년 2022 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재무현황(2021 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MapleBear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가맹본부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메이플베어코리아	영업표지	메이플베어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메이플베어코리아 대표이사 함 선 호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MapleBear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메이플베어코리아	영업표지	메이플베어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 본 부 : (주)메이플베어코리아 대표이사 합 선 호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